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99호 2021. 11. 12.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380호 자치법규 내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3
- 삼척시 조례 제1381호 삼척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24
- 삼척시 조례 제1382호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6
- 삼척시 조례 제1383호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 삼척시 조례 제1384호(의원발의)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삼척시의회 조례 제1385호(의원발의) 삼척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 33
- 삼척시의회 조례 제1386호(의원발의) 삼척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35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8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42
- 삼척시 고시 제185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 45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26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변경(안) 열람 공고 ----- 51
- 삼척시 공고 제1273호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2
- 삼척시보건소 공고 제65호 삼척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7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제23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11.01.)에서 의결된 자치법규 내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1년 11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380호

자치법규 내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삼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의 개정) 삼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령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삼척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진흥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3조(「삼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제4조(「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39조의2”를 “제39조의3”으로 한다.

제5조(「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단서 및”을 “및”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재정법 및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를 “법 제16조의2”로 한다.

제7조(「삼척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의 개정) 삼척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제8조(「삼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의 개정) 삼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9조(「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의 개정)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1조(「삼척시 농공지구 공동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농공지구 공동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 중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관한규정」을”을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로 한다.

제12조(「삼척시 나뭇골 감성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나뭇골 감성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로 한다.

제13조(「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1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8조 및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를 “영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를 각각 “영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하며, 수입·지출 등 회계·결산처리는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7조(「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삼척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13조의 규정을”을 “을”로 한다.

제19조(「삼척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을 “「지방회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1조(「삼척시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삼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호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들”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호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공법」 상”을 “공법상”으로 한다.

제22조(「삼척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3조(「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호 중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를 “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4조(「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의 개정)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5조(「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개정)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6조(「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개정)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의2”를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로 한다.

제23조 중 “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7조(「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 개정)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28조(「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 시행령 제7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

제22조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로 한다.

제30조 중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보건복지부·강원도”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으로 한다.

제29조(「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삼척시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한다”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1조(「삼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의 개정) 삼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를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로 한다.

제32조(「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같은 법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한다.
 제33조(「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삼척시 재무회계규칙을”을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로 한다.

제34조(「삼척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 20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6조(「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7조(「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을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38조(「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제39조(「삼척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도로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를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제1호”로 한다.

제40조(「삼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삼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제41조(「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42조(「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육센터내 목욕탕의 사용료, 임대료 등의 결정
2. 체육센터의 효율적 사용방안 강구
3. 기타 체육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및 결정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43조(「삼척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44조(「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삼척시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4조”를 “「도로법」 제1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삼척시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7조(「삼척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의 개정) 삼척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삼척시세부과징수규칙」”을 “「삼척시 시세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8조(「삼척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76조”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6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99조제1항제1호의 구분”을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을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법 제112조제3항제3호”를 “영 제112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46조 중 “제10항제2조”를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삼척시 경관형성 조례」의 개정)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5항”을 “영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삼척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삼척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 ”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1조(「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삼척시 택시운송

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를 “및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로 한다.

제53조(「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의 개정)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4조(「삼척시 건축 조례」의 개정)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의3서식(건축허가신청서)”을 “규칙 제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55조(「삼척시 공동주택 조례」의 개정)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6조(「삼척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삼척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57조(「삼척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삼척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법제56조”를 “법 제55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삼척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를 “「삼척시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조례」 제9조의”로 한다.

제58조(「삼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5항”을 “영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9조(「삼척시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삼척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어촌·어항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1항, 규칙 제19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 및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을 “규칙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60조(「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삼척시 농어업 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1조(「삼척시 영농기술훈련원 관리 조례」의 개정) 삼척시 영농기술훈련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훈련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2조(「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남부분소”를 “원덕분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부분소”를 “미로분소”로 한다.

제63조(「삼척시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4조(「삼척시 천년학 힐링타운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천년학 힐링

타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8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들”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재무 회계규칙」을”을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로 한다.

제65조(「삼척시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66조(「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의 개정)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제67조(「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삼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를 “제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으로 한다.

제69조(「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70조(「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을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라”로 한다.

제71조(「삼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12조”를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72조(「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73조(「삼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의 개정) 삼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가족보건담당”을 “협의회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4조(「삼척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영 제2조제2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75조(「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7조”를 “영 제21조”로 한다.
제16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6조(「삼척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삼척시 수도급수조례”를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77조(「삼척시 수도사업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수도사업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기업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제18조를 삭제한다.

제78조(「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삼척시 재무회계규칙」을”을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로 한다.

제79조(「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재무 회계규칙」을”을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로 한다.

제80조(「삼척시 수로부인 현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수로부인 현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81조(「삼척시 해신당공원 운영 및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조례」의 개정) 삼척시 해신당공원 운영 및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82조(「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1항제9호”를 “제5조제1항제16호”로 한다.

-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감면징수 요금액(제5조 관련)

○ 환선굴

(단위 : 원)

구분		계	입장료	관람료
개 인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9호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무료	무료	무료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료이용권을 소지한 사람	무료	무료	무료
	공원구역 내의 영업소에 종사하기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 사람	무료	무료	무료
	신기면 주민	무료	무료	무료
	삼척시민	2,000	500	1,500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및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반디다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2,000	500	1,500
	관광객 유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00	500	1,500

○ 대금율

(단위 : 원)

구분		계	입장료	관람료	시설이용료
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9호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3,000	무료	무료	3,000
	장애인	6,000	무료	무료	6,000
	공원구역 내의 영업소에 종사하기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 사람	6,000	무료	무료	6,000
인	관내 초등학생	3,000	무료	무료	3,000
	삼척시민	6,000	1,000	2,000	3,000
	폐광지역(태백시,경선군,영월군)주민	6,000	1,000	2,000	3,000
	관광객 유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000	1,000	2,000	3,000

제83조(「삼척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11.01.)에서 의결된 삼척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1년 11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381호

삼척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척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3조(재정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업무의 위탁·대행)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삼척시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23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11.01.)에서 의결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1년 11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382호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를“(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증지”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안”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화폐”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로, “세입조치”를 “납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11.01.)에서 의결된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1년 11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383호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번호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_____							(전화번호 _____)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p>「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년 _____ 월 _____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삼척시장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rowspan="2">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td> <td>수수료</td> </tr> <tr> <td>없음</td> </tr> </table> <p>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p>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보훈번호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국가 보훈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삼척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처로부터 전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증(유족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23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11.01.)에서 의결된 삼척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1년 11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384호(의원 발의)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삼척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동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삼척시의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및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
2. 삼척교육지원청 및 삼척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원단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조제3호 중 “청소년수련시설의”를 “청소년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중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로 한다.

4.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보조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
6.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7.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

제4조제1항 중 “3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로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4조의2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를 신청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11.01.)에서 의결된 삼척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1년 11월 12일

삼척시의회 조례 제1385호(의원 발의)

삼척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의회의 발전 및 삼척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삼척시 의정회의 설치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삼척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삼척시 의회의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현임 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①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삼척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
3. 삼척시의 사회복지·환경·교통 문제에 대한 연구

- 4. 시정 홍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 5. 국내외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행정자료의 제공·지원) ① 의정회는 삼척시 및 삼척시의회에 대하여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삼척시 의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정회는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를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3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정회가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의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11.01.)에서 의결된 삼척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1년 11월 12일

삼척시의회 조례 제1386호(의원 발의)

삼척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 및 입법활동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 사건(고소·고발을 포함한다)등의 자문 및 소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3조(위촉) ① 삼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가운데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고문변호사가 제4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 2.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들 초래한 경우
-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운영) ① 고문변호사에 관한 업무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의회 의원 또는 전문위원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결과를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 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 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7조(의원 소송비용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형사 사건 등을 당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활동비로 심급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의원 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은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은 해당 의원이 의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의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부의장에게 신청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에서 결정한다.

1.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2. 제1항 단서에 따른 반납을 결정할 때 법원의 확정 판결문 등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이에 대한 결정

④ 제1항의 경우 의원이 의회와 동일사건으로 피소되어 의회의 소송대리인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에게 해당 의원의 수임료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⑤ 고문변호사가 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실적 관리) 의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위하여 의뢰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본인은 「삼척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고문변호사 위촉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삼척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 럽 서 약 서

본인은 삼척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을 동의하며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삼척시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2.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행위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행위 금지
4.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금지
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성명 : (인)

삼척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귀하를 「삼척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삼척시의회의장

[별지 제4호서식]

사건실적부

사건 \ 종류	사건명	의뢰일시	의뢰내용	회신일시	회신내용	참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 타						

삼척시 고시 제2021 -18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9.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2길 52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18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2길 52	20211109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덕산길분기)
2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108-1	강원도 삼척시 적노길 129 (적노동)	2021110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존도로명유지)
3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25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서길 86-227	20211109	기존건물	20090626	행정구역, 방위활용
4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25-4	강원도 삼척시 마달1길 56-1 (마달동)	20211109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활용(마달길분기)
5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235-10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305-76	20211109	가설건축물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동안)활용
6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12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446-18	20211109	가설건축물	20090626	지형지물(두타산)명칭활용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11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길 270-28	2021110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숙압리 6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146-52	20211109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두타산)명칭활용
9	강원도 삼척시 당저동 166-10, 164-1, 164-2, 165-2, 165-3, 166-2, 166-3, 166-5, 167-2, 168-5, 168-6, 168-7	강원도 삼척시 대학로 29 (당저동)	20211109	건물신축	20090626	지역도로명(대학로)명칭활용(도로명유지)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9건	도로명주소	고시일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아산리 18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아산리 52	20211109	건물신축	20090626	임원번호방식형정구역명사용(역산길분기)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108-1	강원도 삼척시 적노길 129 (적노동)	2021110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존도로명유지)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통진리 25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통진서길 86-227	20211109	기존건물	20090626	행정구역, 방위활동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미달동 25-4	강원도 삼척시 미달1길 56-1 (미달동)	20211109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활동(미달길분기)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미포면 사둔리 235-10	강원도 삼척시 미포면 동안로 305-76	20211109	가설건축물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동인)활동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반한리 12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투티로 446-18	20211109	가설건축물	20090626	지형지물(두타산)명칭활동			
부여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촌리 11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촌길 270-28	2021110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부여 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속암리 6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투티로 146-52	20211109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두타산)명칭활동			
부여 9	강원도 삼척시 담계동 166-10, 164-1, 164-2, 165-2, 165-3, 166-2, 166-3, 166-5, 167-2, 168-5, 168-6, 168-7	강원도 삼척시 대하로 29 (담계동)	20211109	건물신축	20090626	지역도로명(대하로)명칭활동(도로명유지)			

삼척시 고시 제2021 - 185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12.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길 133 외 3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3570-394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ag.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303-2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길 133	20211112	기존건물	20090626	지역명(마을명)사용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1길 48-7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 구역명사용 (초곡길분기)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1길 48-3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 구역명사용 (초곡길분기)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안2길 7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 위치 복합 사용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1길 13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일련번호방식명칭 사용(장호길분기)
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229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행정구역, 위치활용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147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행정구역, 위치활용
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81-16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행정구역, 위치활용
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9-19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성지1길 34-7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지역명(동막리마을 명)사용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본동길 70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지역명 (동막리마을명) 사용
1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1길 41-7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덕산길분기)
1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대진길 75-54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지역명 (동막리마을명) 사용
1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5길 102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
1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안길 75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행정구역명, 위치활용
1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1길 36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교가길분기)
1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09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 으로기존도로명 활용
1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657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 으로기존도로명 활용
1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문의재로 3326-67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재)
20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안길 75-26	폐지	20211112	건물별실	20090626	행정구역, 지역지명(안마을) 명칭활용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2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길 249	폐지	20211112	건물멸실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2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탕곡길 62-9	폐지	20211112	건물멸실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3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887	폐지	20211112	건물멸실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4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592-17	폐지	20211112	건물멸실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5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486	폐지	20211112	건물멸실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6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동활길 80-27	폐지	20211112	건물멸실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7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덕풍길 1059-1	폐지	20211112	건물멸실	20090626	지역지명,지형지물 (덕풍계곡) 명칭활용
28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덕풍길 984-153	폐지	20211112	건물멸실	20090626	지역지명,지형지물 (덕풍계곡) 명칭활용
29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533	폐지	20211112	건물멸실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 명칭활용
30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496-18	폐지	20211112	건물멸실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 명칭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계	부여 1건, 폐지 31건	주소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303-2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길 133		20211112	기존건물	20090626	지역명(마을명)사용	확신당공민 제1터표스
폐지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1길 48-7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초곡길분기)	주택
폐지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1길 48-3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초곡길분기)	소주방
폐지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안2길 7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 위치 복합 사용	자율방법대
폐지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1길 13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일련번호방식명칭사용(장호길분기)	주택
폐지	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옹화안길 229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행정구역, 위치활용	주택
폐지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옹화안길 147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행정구역, 위치활용	공가
폐지	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옹화안길 81-16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행정구역, 위치활용	동부건설현장사무소
폐지	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옹화길 9-19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주택
폐지	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성지1길 34-7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지역명(동막리마을명)사용(일련번호방식)	주택
폐지	1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본동길 70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지역명(동막리마을명)사용	배정미소
폐지	1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1길 41-7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덕산길분기)	주택
폐지	1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대전길 75-54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지역명(동막리마을명) 사용	공가
폐지	1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촌5길 102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	공가
폐지	1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고가안길 75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행정구역명, 위치활용	주택
폐지	1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고가1길 36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고가길분기)	주택
폐지	1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09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주택
폐지	1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657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청상건설
폐지	1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본리재로 3326-67				20211112	건물명실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재)	주택
폐지	20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안길 75-26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행정구역, 지역지명(인마름)명칭활용	공가
폐지	2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길 249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공가
폐지	22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담곡길 62-9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공가
폐지	23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887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공가

페이지	24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592-17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공가
페이지	25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486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공가
페이지	26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동활길 80-27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공가
페이지	27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덕봉길 1059-1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지역지명, 지형지물(덕봉계곡)명칭활용	공가
페이지	28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덕봉길 984-153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지역지명, 지형지물(덕봉계곡)명칭활용	주택
페이지	29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진로 1533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지형지물(가곡진)명칭활용	기근휴게소식당
페이지	30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진로 1496-19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지형지물(가곡진)명칭활용	주택
페이지	3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진로 1249-43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지형지물(가곡진)명칭활용	공가
페이지	32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진로 149-3		20211112	건물명실	20090626	지형지물(가곡진)명칭활용	주택

삼척시 공고 제2021-126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변경(안) 열람 공고

삼척시 자원동 산16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주택법」 제19조의 의제사항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토지이용규제의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삼척시장

가. 주요 내용: 기반시설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소로2-102호선 폭원 확장 및 도로명 변경

: 소로2-102호선(폭 8m) → 소로1-16호선(폭 10m)

나. 열람기간: 2021. 11. 12. ~ 2021. 11. 26. (15일간)

다. 열람장소: 삼척시청 도시과

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조서 및 도면: 열람 장소 비치

마. 열람 기간 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삼척시장(도시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관련 기타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1-1273호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삼척시장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현행) 2021년 12월 31일

(개정) 2026년 12월 31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15일까지 작성하여 삼척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 2) 전화: 033-570-3316
- 3) 팩스: 033-570-313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p><u>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 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보건소 공고 제2021-65호

「삼척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삼척시장

삼척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식품영업시설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각 호 외 전문개정(안 제2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삭제(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방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5929) 강원도 삼척시 척주로 76,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
- 전화 : 033-570-4129
- 팩스 : 033-570-4170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하며,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적용대상) <u>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u></p> <p>1. ~ 4.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u>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나목, 라목, 사목의 경우에 한한다.</u></p>	<p>제2조(적용대상) <u>이 규칙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하며,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제></p>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자치법규명 : 「삼척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